

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10 - 12
--------	--------	-----------

수 신 : 거창군의회 의장

2010. 2. 12.

제 목 : 조례안 제출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.

붙 임 :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운영조례안 1부. 끝.

발의자 : 거창군의회 임 종 귀 의원 (인)

거창군의회 강 평 자 의원 (인)

의안번호	제 12 호
의결연월일	2010. 03. . (제 165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

발의자	임종귀 의원 외 1
발의연월일	2010. 02. 12.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10-12호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연월일 2010년 2월 12일

발의자 임종귀의원 외 1인

1. 제안이유

범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.
- 나. 군과 민간단체의 책무(안 제3조·제4조).
- 다. 협의회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.
- 라. 협의회 구성(안 제7조).
- 마. 위원의 임기 및 해촉(안 제8조).
- 바. 보조금 등의 지원(안 제16조·제17조·제18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
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,
 -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 제5조·제9조,
- 나. 예산조치 : 수요발생시 소요예산 확보
- 다. 합의 : 행정과 합의
- 라. 기타 : 해당없음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의 참여·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3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사회적 약자”란 아동·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.
4. “범죄행위”란 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(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)를 말한다.
5. “범죄예방 봉사활동”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6. “민간단체”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의 책무)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,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민간단체의 책무)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지역치안협의회

제5조(설치 및 기능)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
2.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
3.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,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
4.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5.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
6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

제6조(협의회의 존속기한)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>(*조례 공포·시행일부터 5년 이내로 명시)

제7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군의회 의장
2. 거창교육청 교육장
3. 거창소방서장

4. 행정·치안·교육·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,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,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.

-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-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12조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3조(필요경비 지원 등)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

제15조(민간단체의 요건)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둘 것
2.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
3.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

제16조(보조금 등의 지원) ① 군수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

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(장례비 등 지원) ①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(이하 “장례비 등”이라 한다)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.

제18조(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)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
2. 「국가배상법」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